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제명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보건 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시험의뢰 및 교육신청 등) ①조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시료를, 교육훈련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교육훈련신청서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한 자는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별표1에서 규정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검사·시험항목에 대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시험의뢰 접수증을 별표1에 의한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간이속성검사: 농약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생물체효소(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 등을 사용하여 농약의 잔류여부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판별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양성반응: 잔류되어 있는 농약에 의해 생물체효소 등의 반응이 50% 이상 저해를 받았을 때를 말한다.

현행	개정안
<p>④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검사·시험법, 제조법, 검사·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p>제3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반환) ①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2</li> <li>2. 시험성적서 등의 재교부수수료 : 별표3</li> <li>3.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비 : 별표4</li> </ol> <p>②조례 제2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자 및 신청자가 수수료 등을 현금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한다.</p> <p>③원장은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험수수료 등을 과다 징수한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p> <p>④조례 제4조에서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검사·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p> <p>⑤조례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검사·시험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에서 간이속성검사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에 한한다.</p>	<p>제3조(검사·시험의뢰 절차) 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시험의뢰서(이하 "의뢰서"라 한다)와 별표 1에 따라 시료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별표 1에서 규정된 시료를 현장에서 채취하여야 하는 검사·시험항목에 대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검사·시험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검사·시험의뢰 접수증을 별표 1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원장은 필요시 의뢰자에게 검사·시험법, 제조법, 검사·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 및 성분표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p>

현행	개정안
<p>제4조(처리절차 등) ①원장은 검사·시험업무를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서 및 시료는 관리부장이 접수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검사·시험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li> <li>관리부장은 의뢰서의 검사·시험항목이 2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의 정도가 높은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받은 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li> <li>담당부서의 장은 검사·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관리부장에게 통보한다.</li> <li>관리부장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검사·시험성적서를 의뢰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한다.</li> <li>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검사·시험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li> </ol> <p>②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훈련 운영을 위해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교육신청서 접수 및 수수료증 수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수료증을 수여한다.</p>	<p>제4조(검사·시험업무 처리절차) 원장은 제3조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받은 때에는 검사·시험업무를 다음과 같이 배분하여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3조제1항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는 관리부장이 접수하여 검사·시험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배부한다. 다만, 시료의 분류 및 검사·시험항목의 적용범위 등이 불분명할 때는 해당 항목 담당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한다.</li> <li>관리부장은 의뢰서의 검사·시험항목이 2이상의 부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며, 배부 받은 담당부서의 장이 유관 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한다.</li> <li>담당부서의 장은 검사·시험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 서식의 검사·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관리부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법령과 고시에서 정하는 성적서 양식이나 관련규정이 있을 시 해당 양식을 이용하거나 규정에 맞도록 부분 변경된 서식으로 통지할 수 있다.</li> <li>관리부장은 제3호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검사·시험성적서(재교부 포함)를 의뢰인에게 발급 또는 발송한다.</li> <li>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사·시험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업무시스템(연구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시에는 이를 통한 검사·시험 업무처리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li> </ol>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검사·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의뢰자가 검사·시험성적서 또는 그 외국어 번역문 및 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수료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5조(검사·시험성적서의 재교부) 의뢰자가 검사·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의 영어 번역문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시료의 반환)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고 의뢰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시험을 완료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한 시료</li> <li>2. 검사·시험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li> <li>3. 의뢰자가 검사·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li> </ol>	<p>제6조(시료의 반환)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시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의뢰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시험을 완료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하지 아니한 시료</li> <li>2. 검사·시험결과 적합 판정된 시료</li> <li>3. 의뢰자가 검사·시험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때</li> </ol>
<p>제7조 (준용규정)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 환경연구에 관한 검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을 준용한다.</p>	<p>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검사·시험수수료 : 별표 2</li> <li>2. 검사·시험성적서 등 재교부 수수료 : 별표 3</li> </ol> <p>② 조례 제7조제4항에서 의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라 함은 검사·시험에 적합한 기기, 방법 또는 기준 등이 없어 검사·시험이 불가능하였을 때를 말한다.</p> <p>③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검사·시험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에서 간이속성 검사 결과 양성반응으로 판정된 농산물에 대하여 의뢰하는 것에 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8조(계약체결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연구용역사업 계약체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따라 작성한다.</p>
<p>〈신 설〉</p>	<p>제9조(원가계산서 작성)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용역 관련 원가계산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을 기준으로 작성한다.</p>
	<p>제10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사·시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수수료 및 검사 의뢰 기준 고시」를 준용한다.</p>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1]

###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제2조 관련)

#### 1. 미생물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미생물학적검사		
(1) 일반세균	5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2) 유산균	5일	
(3) 대장균군(정성, 정량)	10일	
(4) 대장균	10일	
(5) 식중독균	20일	
(6) 레지오넬라균	12일	가. 냉각탑수 2ℓ이상
(7) 기타미생물검사	20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가. 일반의약품		
(1) 일반검사	15일	가. 내용고형제 (1) 과립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2) 산제(1회용) 3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3) 분말시럽제 300g (4) 정제(질정포함) 100정 (5) 캡셀제(연질캡셀포함) 100캡셀 (6) 트로키제 100정 (7) 환제 100환
(가) 무균시험포함시	20일	
(나) 미생물허용시험포함시	20일	
(다) 동물실험포함시	20일	
(라) 엔도독신시험포함시	20일	
(마) 세포독성시험포함시	40일	
(바) 항생제 역가시험포함시	30일	

[별표 1]

### 처리기간 및 시료소요량 (제3조 제1항 관련)

#### 1. 미생물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미생물학적검사		
(1) 일반세균	5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2) 유산균	5일	
(3) 대장균군(정성, 정량)	10일	
(4) 대장균	10일	
(5) 식중독균	20일	
(6) 레지오넬라균	12일	가. 냉각탑수 2ℓ이상
(7) 기타미생물검사	20일	가. 액체 : 200ml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나. 고체 : 200g이상의 포장단위 3개이상

## 현 행

## 개 정 안

### 2.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나. 수입의약품		
(1) 단일성분	30일	나. 내용액제 (1) 액제(1회용) 40병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7개이상)
(가) 동물실험포함시	50일	(2) 현탁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2) 복합성분	50일	(3) 시럽제(1회용) 40병 (분할용인 경우 100g이상, 포장단위 1개이상)
		(4) 흡입제 50개
		다. 외용고형제
		(1) 좌제(항문, 질 등) 100개
		(2) 연고제 20개
		(3) 크림제 20개
		(4) 산제 20개
		(5) 액제 20병
		(6) 에어로졸제 15동
		(7) 로션제 20병
		(8) 경고제(고약류) 40개
		(9) 경고제(파스류) 45개
		라. 안과용제
		(1) 안연고제 20개
		(2) 점안제 30개
		마. 주사제
		(1) 1ml미만 25병
		(2) 1ml ~ 20ml미만 25병
		(3) 20ml ~ 100ml미만 20병
		(4) 100ml이상 15병

### 2. 의약품·의약외품 및 한약재 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일반의약품 및 일반의약외품		
(1) 일반검사	15일	가. 의약품
(가) 무균시험포함시	20일	(1) 과립제,산제,시럽제,겔제,로션제,액제,연고제,유제,점안제, 크림제 및 현탁제 등(분포제제 제외)
(나) 미생물한도시험포함시	20일	(가) 150g(또는 150mL)이하 제제 40개
(다) 동물실험포함시	20일	(나) 150g(또는 150mL)초과 제제 5개
(라) 엔도독신시험포함시	20일	(2) 정제,캡슐제,좌제,트로키제,환제,분포제제인 과립제,산제, 시럽제,액제,겔제,현탁제 등 100개
(마) 세포독성시험포함시	40일	(3) 첩부제, 카티플라스마제 45개
(바) 항생제 역가시험포함시	30일	(4) 주사제
나. 수입의약품 및 수입의약외품		
(1) 단일성분	30일	(가) 5ml미만 100병
(가) 동물실험포함시	50일	(나) 5ml~20mL 미만 50병
		(다) 20mL~100mL 미만 20병
		(라) 100mL 이상 15병
(2) 복합성분	50일	(마) 녹여 쓰는 주사제는 녹였을 때의 용량에 따라 소요량 결정

현 행			개 정 안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바. 생약제제 (1) 과립제 500g 포장단위 1개이상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2) 산제(1회용) 100포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3) 시럽제(100ml이하) 40병 (분할용인 경우 내용고형제에 준함) (4) 톨크제 40병 (5) 환제 (가) 0.3g이상 50환 (나) 0.1g~0.3g미만 100환 (다) 0.1g미만 100환이상 ※ 단. ①무균시험, 미생물허용시험 및 엔도톡신시험시 포장 단위 3개이상 추가 ②수입의약품수거기간(1~3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5) 원료의약품 50g 이상. ※ 단. ① 무균시험, 미생물한도시험, 엔도톡신시험 및 기타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이 추가될 수 있음. ② 항목시험으로 의뢰시 시료소요량은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량만큼 수거 ③ 수입의약품수거기간(1~3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나. 의약품외품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0개 (2) 생리처리용 탐폰 60개 (3) 마스크 15개 (4) 황사마스크, 누설을포함 50개(25개는 진공포장) 누설을 제외 40개(20개는 진공포장) (5) 안대 20개 (6) 치약 40개 (150g초과인 경우 5개) (7) 약용비누 15개(500g이상인 경우 5개) (8) 에어로졸제 20캔 (9) 모기향 50매 (10) 흡연제 30매 (11) 증산제 30매 (12) 염도제 13개(단, 150g(ml) 초과인 경우 4개) (13) 거즈 20개 (14) 팩거즈 30개 (15) 바셀린 가제 35개 (16) 스펀지 가제 4팩 (17) 붕대 20개 (18) 석고붕대 15개 (19) 탄력붕대 12개 (10) 탈지면 10개 (21) 반창고 10개 (22) 일회용 반창고 50매 (23) 삼각끈 10개 (24) 스테키넷12개 (25) 복부용패드 20개 (26) 압박대 15개 (27) 소독포 12개 (28) 외과용 비닐수술포 15개 (29) 전염병예방용살균살충제 13개(단, 150g(ml)초과인 경우 4개) (30) 기타 의약품외품: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결정 ※ 단. ① 무균시험, 미생물한도시험, 엔도톡신시험 및 기타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이 추가될 수 있음. ② 항목시험으로 의뢰시 시료소요량은 시험에 소요되는 필요량만큼 수거 ③ 수입의약품 수거기간(1~3일)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다. 원료의약품	15일	가. 50g이상			
라. 한약재					
(1)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	15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2) 한약재 성분규격검사	15일	가. 1품목당 500g이상			
(3) 중금속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4) 표백제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5)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	2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마. 일반화장품	15일	가. 화장품 4개 - 단,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추가 - 내용량만 실험하는 항목의 경우 3개			
바.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30일	가.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8개			
사. 기능성화장품		나. 기능성화장품 5개 - 단 2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추가			

현행	개정안																			
	<table border="1"> <tr> <td colspan="3" data-bbox="1142 327 2072 375">다. 한약재</td> </tr> <tr> <td data-bbox="1142 375 1489 422">(1)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td> <td data-bbox="1489 375 1579 422">15일</td> <td data-bbox="1579 375 2072 422">가. 1품목당 300g이상</td> </tr> <tr> <td data-bbox="1142 422 1489 470">(2) 한약재 성분규격검사</td> <td data-bbox="1489 422 1579 470">15일</td> <td data-bbox="1579 422 2072 470">가. 1품목당 500g이상</td> </tr> <tr> <td data-bbox="1142 470 1489 518">(3) 중금속시험</td> <td data-bbox="1489 470 1579 518">10일</td> <td data-bbox="1579 470 2072 518">가. 1품목당 300g이상</td> </tr> <tr> <td data-bbox="1142 518 1489 566">(4) 표백제시험</td> <td data-bbox="1489 518 1579 566">10일</td> <td data-bbox="1579 518 2072 566">가. 1품목당 300g이상</td> </tr> <tr> <td data-bbox="1142 566 1489 614">(5)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td> <td data-bbox="1489 566 1579 614">20일</td> <td data-bbox="1579 566 2072 614">가. 1품목당 300g이상</td> </tr> </table>		다. 한약재			(1)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	15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2) 한약재 성분규격검사	15일	가. 1품목당 500g이상	(3) 중금속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4) 표백제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5)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	2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다. 한약재																				
(1) 생약 일성분(정성, 정량)	15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2) 한약재 성분규격검사	15일	가. 1품목당 500g이상																		
(3) 중금속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4) 표백제시험	1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5) 잔류농약(다성분 및 일성분)	20일	가. 1품목당 300g이상																		

## 현 행

## 개 정 안

### 3. 의료용구 및 의약외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일반검사	15일	가. 의료용구
(1) 동물실험포함시	20일	(1) 관장기 20개
(2) 무균시험포함시	20일	(2) 도뇨관 30개 (단, 로빈슨 및 헤모스타틱형 도뇨관인 경우 20개)
(3) 세포독성시험포함시	40일	(3) 배농관 30개
		(4) 수술용 고무장갑 12족
		(5) 스테인레스강선호침 40개
		(6) 염화비닐수지제혈액세트 65세트
		(7) 의료용 견제봉합사 40올
		(8) 의료용 손가락악크 30개
		(9) 수혈 및 수액세트(1회용) 50세트
		(10) 자궁경부확장용 라미나리아 20개
		(11) 자궁삽입용 리페스루르 200개
		(12) 자궁내 삽입용 피임기구 80개
		(13) 정맥 삽입용 튜브1호 30개
		(14) 정맥 삽입용 튜브2호 65개
		(15) 정맥 삽입용 튜브3호 70개
		(16) 주사기 30개
		(17) 주사침 140개 (단, 1회용이 아닌 경우 20개)
		(18) 1회용 플라스틱 주사기
		(가) 1ml 400개
		(나) 2ml 270개
		(다) 3ml 230개
		(라) 5ml 200개
		(마) 10ml 160개
		(바) 20ml 150개
		(사) 30ml 150개
		(아) 50ml 140개
		(19) 콘돔 50개
		(20) 랫사리 160개

### 3. 화장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일반화장품	15일	가. 화장품 4개 ※ 단, ① 5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추가 ② 내용량만 실험하는 항목의 경우 3개
나.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30일	가. 퍼머넌트 웨이브용 제품 8개
다. 기능성화장품		나. 기능성화장품 5개 ※ 단 2mL 이하 제품인 경우 시험항목에 따라 소요량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나. 의약외품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0개 (2) 생리처리용 탐폰 60개 (3) 마스크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4) 안대 20개 (5) 치약 15개 (500g이상인 경우 5개) (6) 약용비누 15개 (500g이상인 경우 5개) (7) 에어로졸제 20캔 (8) 모기향 50매 (9) 흡연제 30매 (10) 증산제 30매 (11) 염모제 13개 (단, 150g(ml) 초과인 경우 4개) (12) 거즈 2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13) 팩거즈 30개 (14) 바셀린 가제 3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10개 추가) (15) 스폰지 가제 4package (16) 붕대 2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17) 석고붕대 15개 (18) 탄력붕대 12개 (19) 탈지면 10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0) 반창고 10개 (21) 일회용반창고 50매 (22) 삼각끈 10개 (23) 스테키넷 12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4) 복부용패드 20개 (25) 압박대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6) 소독포 12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27) 외과용 비닐수술포 15개 (단, 무균제품인 경우 5개 추가) ※ 단, 세포독상시험시 5개 추가

## 현 행

## 개 정 안

### 4. 식품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과자류		
(1) 빵 및 떡류	12일	가. 400g이상
(2)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껌, 젼류	12일	가. 400g이상
나. 당류	12일	가. 600g이상
다. 아이스크림제품류	12일	가. 200g이상
라. 어육제품	12일	가. 600g이상
마. 두부류 또는 목류	12일	가. 200g이상
바. 식용유지류	12일	가. 400g(ml)이상
사. 면류	12일	가. 600g이상
아. 다류	12일	가. 200g(ml)이상
자. 음료류	12일	가. 600g(ml)이상
차. 특수영양식품	60일	가. 1kg이상
카. 건강보조식품	20일	가. 1kg이상
타. 조미식품		
(1)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청국장, 혼합장, 식초, 케찹	12일	가. 600g(ml)이상
(2) 소스류, 향미유,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3) 카레, 고춧가루 및 실고추, 드레싱	12일	가. 600g(ml)이상
파. 얼음	12일	가. 600g(ml)이상, 포장단위 2개이상
하. 인삼·홍삼제품류		
(1) 농축인삼·홍삼류, 인삼·홍삼분말류, 인삼·홍삼차류	12일	가. 200g(ml)이상
(2) 인삼·홍삼음료	12일	가. 600g(ml)이상
(3) 인삼과자류		
(가) 인삼캔디류	12일	가. 600g이상
(나) 인삼껌	12일	가. 400g이상
(4) 당침인삼	12일	가. 400g(ml)이상

### 4. 식품분야

가. 식품(식품접객업소 등의 음식물 포함)

검 사 · 시 험 종 별	시료 소요량	처리기간
(1) 가공식품	600g (mL) (다만, 캡슐류는 200g)	(1) 특수영양식품 : 60일 (2) 건강기능식품 : 20일 (3) 주류 : 20일
(2) 유통처리식품	추가 1kg	(4) 잔류농약검사
(3) 자연산물	1~3kg  1~3kg 3~5kg 0.3~4kg	(가) 다성분 동시분석 : 3일 (나) 단성분 분석 : 15일
(가)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5) 수산물 (가) 마비성패독검사 : 3일
(나) 채소류		(나) 일산화탄소검사 : 12일
(다) 과일류		(다) 중금속검사 : 12일
(라) 수산물		(라) 상기외의 검사 : 12일
(6) 장기보존식품 (가) 병·통조림식품 : 19일 (나) 레토르트식품 : 19일		
(7) 표시기준항목 : 17일		
(8) 상기외의 식품 : 12일		
<b>비 고</b>		
<p>(1) 시료 소요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건 당 시료 소요량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취위로 인한 오염 등 소분·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p> <p>(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질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액은 0.3kg).</p> <p>(3)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4개(세균발육검사용 3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4) 2개 이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 한다.</p> <p>(5)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시료 소요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p>(6)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p> <p>※ 시료 소요량은 시험항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p>		

## 현 행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5) 인삼갑셀(정)류, 홍삼갑셀(정)류	12일	가. 300갑셀(정)이상 또는 600g이상
(6) 기타 인삼·홍삼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거. 김치·절임류	12일	가. 400g(ml)이상
너. 주류	20일	가. 600g(ml)이상
더. 건포류	12일	가. 400g(ml)이상
러. 기타식품류		
(1) 전분	12일	가. 200g이상
(2) 벌꿀	12일	가. 600g이상
머. 자연산물		
(1) 잔류농약검사		
(가) 다성분 동시분석	3일	가. 과일 및 채소류 : 3kg이상
(나) 단성분 분석	15일	나. 곡류 : 1kg이상
(2) 중금속검사	12일	가. 600g이상
버. 수산물		
(1) 마비성패독검사	3일	
(2) 일산화탄소검사	5일	가. 패육 : 300g이상. 단, 개각 안한 패류는 1kg이상
(3) 중금속검사	12일	나. 냉동어류 기타 수산물 : 600g이상
(4) 상기외의 검사	12일	다. 진공포장인 경우 포장단위 5개이상
서. 공통기준 및 규격		
(1) 병·통조림	19일	가. 400g(ml)이상
(2) 레토르트식품	19일	가. 400g(ml)이상
(3) 냉동식품	12일	가. 400g(ml)이상
어. 상기외의 식품류	12일	가. 400g(ml)이상
※ 시공품은 포장과 제조년월일이 동일한 완제품일 것. 단, ①미생물검사항목 또는 고형량(내용량)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용량검사시 시료량이 추가될 수 있음) ②유령처리인 경우 1kg이상		

## 개 정 안

### 나. 식품첨가물

검 사 · 시 험 종 별	시료 소요량	처리기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고체 : 200g 액체 : 500g(mL) 기체 : 1kg	(1) 식품첨가물 (가)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 20일
비소·중금속 함유량시험	50g(mL)	20일

#### 비 고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기구 또는 용기·포장

검 사 · 시 험 종 별	시료 소요량	처리기간
재 질 · 용 출 시 험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대한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15일
<b>비 고</b>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라. 위생용품

검 사 · 시 험 종 별	시료 소요량	처리기간
기준 · 규격 및 항목시험	600g(mL)이상 ※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15일

## 현 행

## 개 정 안

### 5.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가. 첨가물		
(1)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20일	가. 고체 : 200g이상 나. 액체 : 500g(ml)이상 다. 기체 : 1kg이상
(2) 비소·중금속 함유량시험	20일	가. 50g(ml)이상
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	15일	가. 재질시험 : 50g이상 (단, PVC는 100g이상) 나. 용출시험 (1) 기구·포장 : 1m <sup>2</sup> 이상 (2) 용기 : 100ml기준 15개이상 (단, 유리, 도자기, 법랑 및 용기류는 5개이상, 목재는 50g이상)
다. 위생용품		
(1) 기준·규격 및 항목시험	15일	가. 600g(ml)이상.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 단위 6개이상

### 5. 축산물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 리 기 간	시 료 소 요 량
가. 식육·식육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1개 이상) ※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나. 유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1개 이상) ※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다. 알가공품	12일	가. 200g(ml) (포장단위 1개 이상) ※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라. 분유류	30일	가. 500g(ml) (포장단위 1개 이상) ※ 단, 미생물검사 항목이 있는 경우는 포장단위 6개이상
마. 축산물유해잔류물질검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20일	가. 500g(ml) (포장단위 1개 이상) ※ 단, 식용란 경우는 5알 이상
바. 장기보존축산물 (병·통조림 및 레토르트 제품)	19일	가. 포장단위 6개 이상

## 현 행

## 개 정 안

### 6. 축산물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식육·식육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나. 유가공품	12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다. 알가공품	12일	가. 2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라. 분유류	30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 세균검사 포함시 6개)이상
마. 축산물유해잔류물질검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20일	가. 500g(ml) (포장단위 3개)이상

### 6. 환경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가스성분시험	14일	가. 현장채취
나. 입자상물질성분시험		
(1) 먼지, 비산먼지, 부유먼지, 증기속항목	14일	가. 현장채취
(2) 매연	7일	
다. 악취시험		
(1) 직접관능법, 공기회석관능법	7일	가. 현장채취
(2) 기기분석법	14일	
라. 환경소음진동측정		
(1) 기록측정(소음, 진동)	2일	가. 현장측정
(2) 대역분석(소음, 진동)	2일	
(3) 소음표시권고사항 기계소음도 측정	2일	
마. 실내공기질검사		
(1)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2일	가. 현장채취
(2) 미세먼지(PM10)	4일	
(3) 석면		
(가) 위상차현미경법	5일	
(나) 투과전자현미경법	10일	
(4) 포름알데히드	9일	
(5)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11일	
바. 수질검사		
(1) 폐허수, 하천수		
(가) 일반항목 및 중금속류	7일	가. PE용기 4L이상 나. n-Hexan검사시 : 유리용기 2L이상
(나) 수은 및 휘발성저급탄화수소류	10일	가. 유리용기 2L이상
(다) 특정유해물질류(PCB, 유기인)	15일	가. 유리용기 2L이상
(2)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가) 10항목이하	10일	가. 3L이상
(나) 11 ~ 20항목	15일	가. 4L이상
(다) 21 ~ 45항목	20일	가. 6L이상
(라) 46항목이상	20일	가. 8L이상
(3) 욕수, 욕조수 기준	12일	가. 2L이상

현행	개정안			
	검사·시험종별	처리기간	시료소요량	
	(4) 수영장수 기준	12일	가. 1지점당 500mL이상×5개지점	
	(5) 오수, 분뇨, 방류수검사	7일	가. 3L이상	
	(6) 침출수검사	20일	가. 5L이상	
	사. 수처리제검사	17일	가. 고체 500g이상 나. 액체 500mL이상	
	아. 유독물시험	15일	가. 완전포장단위 액체 500g이상, 고체 100g이상	
	자. 폐기물 및 토양검사			
	(1) 용출시험	15일	가. 500g이상	
	(2) 함유시험	15일	가. 500g이상	
	(3) 음식폐기물(함수율)	3일	가. 500g이상	
	(4) 폐유기용제			
	(가) 5항목미만	10일	가. 1L이상	
	(나) 5항목이상	20일	가. 1L이상	
	(5) 전지류중 수은함유량	15일	가. 200g이상	
	(6) 석면	7일	가. 10g이상	
	(7) 토양오염도검사			
	(가) Cd, Cu, As, Hg, Pb, Cr+6, CN	20일	가. 토양 500g이상 (수은, 시안분석시 :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나) 유기인, PCB, 페놀	30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다) 토양중 잔류농약	30일	가. 1kg이상	
	(라) 17개 항목 이상	35일	가. 폴리에틸렌봉투와 광구유리병에 각각 500g 이상	
	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1) BTEX	25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2) TPH	35일		
	카. 환경시료중 다이옥신류 검사			
	(1) 소각장 가스	60일	가. 현장채취	
	(2) 토양, 폐기물, 물	50일	가. 토양 : 500g이상 나. 폐기물 : 500g이상 다. 물 : 20L이상	
	(3) 정제시료	10일	가. 20μL이상	
	※ 비고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검사·시험종목(품목)에 대하여는 유사 검사·시험종목(품목)에 준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7. 환경분야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가. 가스성분시험	14일	가. 현장채취
나. 입자상물질성분시험		
(1) 먼지, 비산먼지, 부유먼지, 증기·향목	14일	
(2) 매연	7일	
다. 약취시험		
(1) 직접관능법, 공기희석관능법	7일	
(2) 기기분석법	14일	
라. 환경소음진동측정		
(1) 기록측정(소음, 진동)	2일	가. 현장측정
(2) 대역분석(소음, 진동)	2일	
(3) 소음표시권고사항 기계소음도 측정	2일	
마. 실내공기질검사		
(1)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오존, 이산화질소, 라돈	2일	가. 현장채취
(2) 미세먼지(PM10)	4일	
(3) 석면	5일	
(4) 포름알데히드	9일	
(5) 휘발성유기화합물, 총부유세균	11일	

## 현 행

## 개 정 안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바. 수질검사		
(1) 폐하수, 하천수		
(가) 일반항목 및 중금속류	7일	가. PE용기 4ℓ이상 나. n-Hexan검사시 : 유리용기 2ℓ이상
(나) 수은 및 휘발성저급탄화수소류	10일	가. 유리용기 2ℓ이상
(다) 특정유해물질류(PCB, 유기인)	15일	가. 유리용기 2ℓ이상
(2) 지하수(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가) 10항목이하	10일	가. 3ℓ이상
(나) 11 ~ 20항목	15일	가. 4ℓ이상
(다) 21 ~ 45항목	20일	가. 6ℓ이상
(라) 46항목이상	20일	가. 8ℓ이상
(3) 옥수, 옥조수 기준	12일	가. 2ℓ이상
(4) 수영장수 기준	12일	가. 1지점당 500ml이상×5개지점
(5) 오수, 분뇨, 방류수검사	7일	가. 3ℓ이상
(6) 침출수검사	20일	가. 5ℓ이상
사. 수처리제검사	17일	가. 고체 500g이상 나. 액체 500ml이상
야. 살충살서제 및 유독물시험	15일	가. 완전포장단위 액체 500g이상, 고체 100g이상
자. 폐기물 및 토양검사		
(1) 용출시험	15일	가. 500g이상
(2) 함유시험	15일	가. 500g이상
(3) 음식폐기물(합수율)	3일	가. 500g이상

## 현 행

## 개 정 안

검 사 · 시 험 종 별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4) 폐유기용제		
(가) 5항목미만	10일	가. 1ℓ이상
(나) 5항목이상	20일	가. 1ℓ이상
(5) 전지류중 수은함유량	15일	가. 200g이상
(6) 토양오염도검사		
(가) Cd, Cu, As, Hg, Pb, Cr+6, CN	20일	가. 토양 500g이상 (시안분석시 :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나) 유기인, PCB, 폐놀	30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다) 토양중 잔류농약	30일	가. 1kg이상
차.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1) BTEX	25일	가. 광구유리병에 500g이상
(2) TPH	35일	
카. 환경시료중 다이옥신류 검사		
(1) 소각장 가스	60일	가. 현장채취
(2) 토양, 폐기물, 물	50일	가. 토양 : 500g이상 나. 폐기물 : 500g이상 다. 물 : 20ℓ이상
(3) 정제시료	10일	가. 1ml이상

\* 비고 : 위 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검사·시험종목(품목)에 대하여는 유사 검사·시험종목(품목)에 준한다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2]

### 검사·시험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미생물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1. 장내세균(살모넬라, 쉬겔라, 장염비브리오, 슈도모나스, 사이트로박터, 프로테우스, 예시니아, 병원성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의 검사 (1항목당)	15,000
		2. 레지오넬라균검사	40,000
		3. 혐기성균군검사	20,000
		4. 일반세균검사, 유산균수검사, 진균수검사 (1항목당)	15,000
		5. 대장균군 검사, 대장균 검사 (1항목당)	20,900
		6. 식중독균검사	
		가. 살모넬라검사(Salmonella spp.), 병원성 대장균검사, 장염 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항목당)	25,600
		나. 예시니아 엔텔로코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1항목당)	25,600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 스트리디움, 보틀리눔(Clostridium botulinum),캠필로박터 (1항목당)	31,000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2. 수출인삼제제 검정	해당시험 항목에 준하여 산정		
3. 항생물질제제(생물학적)의 역가시험 (1항목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52,200		
5. 안전성시험	27,000		
6. 무균시험			
가. 직접법	20,900		
나. 멤브레인필터법	35,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 (1성분당)	27,000		

[별표 2]

### 검사·시험수수료 (제7조 제1항 관련)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미생물학적 검사	미생물학적 검사	1. 장내세균(살모넬라, 쉬겔라, 장염비브리오, 슈도모나스, 사이트로박터, 프로테우스, 예시니아, 병원성대장균, 장출혈성대장균)의 검사 (1항목당)	15,000
		2. 레지오넬라균검사	40,000
		3. 혐기성균군검사	20,000
		4. 일반세균검사, 유산균수검사, 진균수검사 (1항목당)	15,000
		5. 대장균군 검사, 대장균 검사 (1항목당)	20,900
		6. 식중독균검사	
		가. 살모넬라검사(Salmonella spp.), 병원성 대장균검사, 장염 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1항목당)	25,600
		나. 예시니아 엔텔로코리티카(Yersinia enterocolitica),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 (1항목당)	25,600
		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클로 스트리디움, 보틀리눔(Clostridium botulinum),캠필로박터 (1항목당)	31,000
		의약품·한약재 및 화장품류의 시험	의약품 및 한약재
2. 수출인삼제제 검정	해당시험 항목에 준하여 산정		
3. 항생물질제제(생물학적)의 역가시험 (1항목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52,200		
5. 안전성시험	27,000		
6. 무균시험			
가. 직접법	20,900		
나. 멤브레인필터법	35,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 (1성분당)	27,0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1. 피·에이치 (pH)	9,000	식품·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1. 피·에이치 (pH)	9,000
		2. 비중	2,800			2. 비중	2,800
		3. 굴절률	5,900			3. 굴절률	5,900
		4. 색도	4,700			4. 색도	4,700
		5. 진공도	3,600			5. 진공도	3,600
		6. 가스압	3,800			6. 가스압	3,800
		7. 형광증백제	8,600			7. 형광증백제	8,600
		8. 미량영양성분				8. 미량영양성분	
		가. 비타민 A	91,600			가. 비타민 A	91,600
		나. 비타민 B1	71,400			나. 비타민 B1	71,400
		다. 비타민 B2	93,900			다. 비타민 B2	93,900
		라. 나이아신	66,400			라. 나이아신	66,400
		마. 칼슘, 인, 철, 나트륨, 아연 (1항목당)	53,900			마. 칼슘, 인, 철, 나트륨, 아연 (1항목당)	53,900
		바.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바. 비타민의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9. 아플라톡신(정성,정량) (1항목당)	100,000			9. 총 아플라톡신	100,000
		10. 항생물질				10. 항생물질	
		가. 정성시험 (1항목당)	20,000			가. 정성시험 (1항목당)	2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다.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다. 미생물학적 검사 (1항목당)	73,100				
11. 합성항균제		11. 합성항균제					
가. 정성시험 (결과계)	20,000	가. 정성시험 (결과계)	2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나. 정량시험 (1성분당)	40,000				
12. 성장촉진제 (1성분당)	180,300	12. 성장촉진제 (1성분당)	180,300				
13. 산화방지제	56,000	13. 산화방지제	56,000				
14. 보존료	46,000	14. 보존료	46,000				
15. 착색료 (타르색소)	36,000	15. 착색료 (타르색소)	36,000				
16. 인공감미료 (정성시험)	29,200	16. 인공감미료 (정성시험)	29,200				
17. 발색제 (아질산염)	26,500	17. 발색제 (아질산염)	26,500				
18. 식이섬유	79,000	18. 식이섬유	79,0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식품 ·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19. 이물, 산불용성회분, 총산, 염소이온, 시분, 총염소, 황산이온, 고형량, 입도, 염화나트륨, 당도, 포도당량, 텍스트린분, 고형분, 휘발성 염기질소, 가용성고형분, 비누화가,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전고형분, 산가, 과산화물가, 무염가용성고형분 (1항목당)	10,200	식품 · 식품첨가물 및 용기 등의 시험	식품	19. 이물, 산불용성회분, 총산, 염소이온, 시분, 총염소, 황산이온, 고형량, 입도, 염화나트륨, 당도, 포도당당량, 텍스트린분, 고형분, 휘발성 염기질소, 가용성고형분, 비누화가, 비비누화물, 요오드가, 전고형분, 산가, 과산화물가, 무염가용성고형분 (1항목당)	10,200
		20. 위화물	26,000			20. 위화물	26,000
		21.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이온 (1항목당)	15,800			21. 질산성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이온 (1항목당)	15,800
		22. 용액의 착색도, 용액의 탁도 (1항목당)	15,000			22. 용액의 착색도, 용액의 탁도 (1항목당)	15,000
		23. 인삼성분, 홍삼성분, 홍삼성분확인시험 (1성분당)	39,700			23. 인삼(홍삼)성분, 인삼(홍삼)성분확인시험 (1성분당)	39,700
		24. 히드록시메틸푸트푸랄	21,000			24. 히드록시메틸푸트푸랄	21,000
		25. 이성화당	20,700			25. 이성화당	20,700
		26. 전화당, 환원당, 총당, 올리고당 (1항목당)	39,000			26. 전화당, 환원당, 총당, 올리고당 (1항목당)	39,000
		27. 과당	32,400			27. 과당	32,400
		28. 순추출물	25,500			28. 순추출물	25,500
		29. 차성분	15,000			29. 차성분	15,000
		30. 조지방, 에탄올, 조섬유, 총질소, 아미노산성 질소 (1항목당)	31,600			30. 조지방, 에탄올, 조섬유, 총질소, 아미노산성 질소 (1항목당)	31,600
		31. 냉각시험, 상승용점	43,900			31. 냉각시험, 상승용점	43,900
		32. 주석, 납, 카드뮴, 비소 (1항목당)	86,900			32. 주석, 납, 카드뮴, 비소 (1항목당)	86,900
		33. 알데히드	22,800			33. 알데히드	22,800
		34. 수은	96,100			34. 수은	96,100
		35. 인지질, 알콕시글리세롤, 헥사코사놀, 시안화합물 (1항목당)	36,000			35. 인지질, 알콕시글리세롤, 헥사코사놀, 시안화합물 (1항목당)	36,000
		36. 열량	92,000			36. 열량	92,000
		37. 알파화도, 산도, 유기산도, 단백질응고시험 (1항목당)	13,500			37. 알파화도, 산도, 유기산도, 단백질응고시험 (1항목당)	13,500
38. β-토코페롤, 10-히드록시-2-데센산, γ오리자놀, 단백질, 자실체, 균사체, 히드록시프롤린 (1항목당)	89,000	38. β-토코페롤, 10-히드록시-2-데센산, γ오리자놀, 단백질, 자실체, 균사체, 히드록시프롤린 (1항목당)	89,000				
39. 비타민C, 총토코페롤, γ-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엽록소, 엽록소b, 총페오포르바이드, 엽록소a, 총엽록소, 페오포르바이드, 포스파티딜콜린 조성비, 카테킨, 콘드로이친황산, SOD, 안트라퀴논계물질, 키토올리고당합량, 총플라보노이드(1항목당)	48,400	39. 비타민C, 총토코페롤, γ-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 엽록소, 엽록소b, 총페오포르바이드, 엽록소a, 총엽록소, 페오포르바이드, 포스파티딜콜린 조성비, 카테킨, 콘드로이친황산, SOD, 안트라퀴논계물질, 키토올리고당합량, 총플라보노이드(1항목당)	48,4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액(원)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40.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 (1항목당)	79,900			40.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 (1항목당)	79,900		
		41.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리놀렌산, r-리놀렌산, 팔밀올레산, 스퀴알렌, 콜레스테롤, 옥타코사놀, 메탄올 (1항목당)	58,900			41. 에이코사펜타엔산, 도코사헥사엔산, 리놀렌산, r-리놀렌산, 팔밀올레산, 스퀴알렌, 콜레스테롤, 옥타코사놀, 메탄올 (1항목당)	58,900		
		42.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69,100			42. 아라키돈산+에이코사펜타엔산	69,100		
		43. 기타 미량금속검사, 기타 영양성분 (1항목당)	68,800			43. 기타 미량금속검사, 기타 영양성분 (1항목당)	68,800		
		44. 패류의 마비성패독 검사	36,000			44. 패류의 마비성패독 검사	36,000		
		45. 냉동잡치,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시험	59,000			45. 냉동잡치, 냉동틸라피아의 일산화탄소시험	59,000		
		46. 잔류농약 가. 동시 다성분시험 나. 단성분시험 (1종당)	577,800 81,400			46. 잔류농약 가. 동시 다성분시험 나. 단성분시험 (1종당)	577,800 81,400		
		47. 기타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47. 벤조피렌	86,000		
		식품첨가 물	1. 확인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식품첨가 물	1. 확인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2. 순도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2. 순도시험 (1항목당) 가. 정성반응 나. 기기분석	6,000 33,000
	3. 건조감량		5,000	3. 건조감량	5,000				
	4. 강열잔류물		7,800	4. 강열잔류물	7,800				
	5. 수분 (칼피셔법)		12,000	5. 수분 (칼피셔법)	12,000				
	6. 정량시험 가. 색소(색가) 나. 효소(역가)		6,000 32,000	6. 정량시험 가. 색소(색가) 나. 효소(역가)	6,000 32,000				
	7. 기타시험 (1항목당) 가. 적정법 나. 기기분석		7,700 40,600	7. 기타시험 (1항목당) 가. 적정법 나. 기기분석	7,700 40,600				
	8.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8. 그 밖의 시험 (1항목당)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페놀	27,000		기구 또는 용기·포장	1. 페놀	27,000
		2. 중금속	36,000			2. 중금속	36,000
		3. 형광증백제	8,600			3. 형광증백제	8,600
		4. 색소	9,200			4. 색소	9,200
		5. 염화비닐단량체	38,300			5. 염화비닐단량체	38,300
		6.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6.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33,9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65,2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41,3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48,200
		9. 휘발성물질	30,800			9. 휘발성물질	30,8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1. 바륨	39,300			11. 바륨	39,300
		12. 비스페놀 A	43,800			12. 비스페놀 A	43,8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34,7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34,700
		14. 아민류	21,000			14. 아민류	21,000
		15. 증발잔류물	10,100			15. 증발잔류물	10,100
		1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700			1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8,700
		17. 안티몬	17,300			17. 안티몬	17,300
		18. 게르마늄	34,000			18. 게르마늄	34,000
		19. 포름알데히드	24,000			19. 포름알데히드	24,0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카프로락탐	24,3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및 카프로락탐	24,300
		21. 멜라민	29,200			21. 멜라민	29,200
		22. 이소시아네이트	28,700			22. 이소시아네이트	28,700
		23. 불소이온	20,900			23. 불소이온	20,900
		24. 아크릴로니트릴	24,300			24. 아크릴로니트릴	24,3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25. 2-머캅토이미다졸	32,100			25. 2-머캅토이미다졸	32,100
		26. PCBs	69,100			26. PCBs	69,100
		27.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27.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28.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28. 기타 시험(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위생용품	1. 중금속류	36,000	위생용품	1. 중금속류	36,000	
		2. 색소	9,200		2. 색소	9,200	
		3. 형광증백제, 피 · 에이치(pH), 증발잔류물 (1항목당)	8,600		3. 형광증백제, 피 · 에이치(pH), 증발잔류물 (1항목당)	8,600	
		4. 메틸알콜	43,0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5. 비소, 아연 (1항목당)	36,000	
		6. 계면활성제상당분 가. 에탄올가용분 나. 석유에테르가용분 다. 요소	49,000 53,000 70,600		6. 휘발성물질	30,800	
		7. 휘발성물질	30,800		7.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분 (1항목당)	9,800	
		8.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수분 (1항목당)	9,800		8.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9. 납, 카드뮴 (1항목당)	40,000	9. 페놀	27,000			
	10. 페놀	27,000	10. 폼알데히드	24,000			
	11. 폼알데히드	24,000	11. 기타 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가스성분시험		12. 기타 시험 (1항목당) 가. 기기분석 나. 상기외의 시험	30,000 <small>유사시험항목에 준함</small>	가스성분시험		1. 암모니아	17,400
		1. 암모니아	17,400			2. 일산화탄소	6,000
		2. 일산화탄소	6,000			3. 염화수소	17,400
		3. 염화수소	17,400			4. 염소	17,200
		4. 염소	17,200			5. 황산화물	18,300
5. 황산화물	18,3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액(원)	분야	세부분야	검사·시험항목	금액(원)
대기오염도 검사	도장시설 검사	1. THC(Total Hydrocarbon)농도검사	78,500	대기오염도 검사	도장시설 검사	1. THC(Total Hydrocarbon)농도검사	78,500
다중이용시 설 실내 공기질 검사	실내 공기질 검사	1. 미세먼지(PM10)	22,000	다중이용시 설 실내 공기질 검사	실내 공기질 검사	1. 미세먼지(PM10)	22,000
		2. 석면	45,000			2. 석면	45,000
		3. 이산화탄소(CO2)	6,000			가. 위상차현미경법	45,000
		4. 일산화탄소(CO)	6,000			나. 투과전자현미경법	268,700
		5. 포름알데히드(HCHO)	23,100			3. 이산화탄소(CO2)	6,000
		6. 이산화질소(NO2)	18,400			4. 일산화탄소(CO)	6,000
		7. 오존(O3)	51,000			5. 포름알데히드(HCHO)	23,100
		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5,000			6. 이산화질소(NO2)	18,400
		9. 라돈	58,100			7. 오존(O3)	51,000
		10. 총부유세균	39,400			8.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55,000
수질검사	폐하수·오 수 ·하천수·호 소수	1. 수소이온농도	800	수질검사	폐하수·오 수 ·하천수·호 소수	1. 수소이온농도	800
		2. 전기전도도	3,000			2. 전기전도도	3,000
		3. 온도	300			3. 온도	300
		4. 색도 (투과율법)	2,900			4. 색도 (투과율법)	2,900
		5. 부유물질	2,800			5. 부유물질	2,800
		6. 총노말 - 핵산추출물질	6,000			6. 총노말 - 핵산추출물질	6,000
		7. 노말 - 핵산추출물질(광유류)	15,400			7. 노말 - 핵산추출물질(광유류)	15,400
		8. 인산염인	5,600			8. 인산염인	5,600
		9. 염소이온	2,900			9. 염소이온	2,900
		10. 화학적 산소요구량	7,300			10. 화학적 산소요구량	7,300
		1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			1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5,800
		12. 용존산소	2,800			12. 용존산소	2,800
		13. 총인, 용존총인 (1항목당)	3,400			13. 총인, 용존총인 (1항목당)	3,400
		14. 총질소, 용존총질소 (1항목당)	3,700			14. 총질소, 용존총질소 (1항목당)	3,700
		15. 암모니아성 질소	10,800			15. 암모니아성 질소	10,800

## 현 행

## 개 정 안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먹는물, 먹는샘물	3. 냄새	600
		4. 색도	2,600
		5. 탁도	400
		6. 총경도	2,400
		7. 유리탄산	2,500
		8. 증발잔류물	2,900
		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
		10. 잔류염소	3,700
		11. 염소이온	3,900
		12. 황산이온	11,800
		13. 암모니아성 질소	2,300
		14. 질산성 질소	7,200
		15. 시안	11,300
		16. 페놀류	9,300
		17. 세제	9,200
		18. 불소	9,300
		19. 유기인계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15,600
		20. 구리	6,100
		21. 카드뮴	6,100
		22. 납	6,100
		23. 세레늄	6,600
		24. 아연	6,100
		25. 망간	6,100
		26. 철	6,100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먹는물, 먹는샘물	3. 냄새	600
		4. 색도	2,600
		5. 탁도	400
		6. 총경도	2,400
		7. 브론산염	7,200
		8. 증발잔류물	2,900
		9.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2,800
		10. 잔류염소	3,700
		11. 염소이온	3,900
		12. 황산이온	11,800
		13. 암모니아성 질소	2,300
		14. 질산성 질소	7,200
		15. 시안	11,300
		16. 페놀류	9,300
		17. 세제	9,200
		18. 불소	9,300
		19. 유기인계농약(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15,600
		20. 구리	6,100
		21. 카드뮴	6,100
		22. 납	6,100
		23. 세레늄	6,600
		24. 아연	6,100
		25. 망간	6,100
		26. 철	6,1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27. 알루미늄	6,100			27. 알루미늄	6,100
		28. 보론(B)	3,100			28. 보론(B)	3,100
		29. 비소	7,700			29. 비소	7,700
		30. 수은	6,600			30. 수은	6,600
		31. 6가크롬	3,900			31. 크롬	3,900
		32. 휘발성 유기물질류				32. 휘발성 유기물질류	
		- 총트리할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9,600			- 총트리할로로메탄,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19,600
		-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600			-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3,600
		33. 대장균	6,200			33. 대장균	6,200
		34. 총대장균군	8,800			34. 총대장균군	8,800
		35. 일반세균	5,300			35. 일반세균	5,300
		36. 저온 일반세균	6,100			36. 저온 일반세균	6,100
		37. 분원성 대장균군	8,400			37. 분원성 대장균군	8,400
		38. 분원성 연쇄상구균	9,200			38. 분원성 연쇄상구균	9,200
		39. 녹농균	13,100			39. 녹농균	13,100
		40.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5,300			40. 아황산환원 혐기성포자 형성균	5,300
		41. 쉬겔라	14,600			41. 쉬겔라	14,600
		42. 살모넬라	15,900			42. 살모넬라	15,900
		43. 카바틸	15,700			43. 카바틸	15,700
		4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21,400			44.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21,400
		45.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29,200			45. 할로아세틱에시드(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29,200
						46. 1, 4-다이옥산	19,600
						47. 스트론튬	6,100

## 현 행

## 개 정 안

현 행				개 정 안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분야	세부분야	검사 시험항목	금액(원)
폐기물 및 토양검사	폐기물시험검사	1. 수소이온농도	4,000	폐기물 및 토양검사	폐기물시험검사	1. 수소이온농도	4,000
		2. 수분 또는 고형물 (1항목당)	2,200			2. 수분 또는 고형물 (1항목당)	2,200
		3. 강열감량	4,000			3. 강열감량	4,000
		4. 유기물 함량	4,000			4. 유기물 함량	4,000
		5. 기름성분	10,800			5. 기름성분	10,800
		6. 시안	18,200			6. 시안	18,200
		가. 함유시험	22,200			가. 함유시험	22,2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7. 유기인	25,100			7. 유기인	25,100
		가. 함유시험	29,000			가. 함유시험	29,0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8. PCB	188,000			8. PCB	188,000
		가. 함유시험	123,000			가. 함유시험	123,0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9.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소류	27,400			9. 휘발성 저급 염소화탄화수소류	27,400
		가. 함유시험	28,200			가. 함유시험	28,2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10. 크롬·구리·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39,100			10. 크롬·구리·카드뮴 또는 납 등 중금속	39,100
	가. 함유시험 (1성분당)	15,100	가. 함유시험 (1성분당)	15,100			
	나. 용출시험 (1성분당)		나. 용출시험 (1성분당)				
11. 비소	13,700	11. 비소	13,700				
가. 함유시험	16,900	가. 함유시험	16,9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12. 수은	8,800	12. 수은	8,800				
가. 함유시험	11,800	가. 함유시험	11,8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13. 6가크롬	13,300	13. 6가크롬	13,300				
가. 함유시험	17,700	가. 함유시험	17,700				
나. 용출시험		나. 용출시험					
14. 할로겐화유기물질(1성분당)	12,800	14. 할로겐화유기물질(1성분당)	12,800				
가. 함유시험 (휘발성)	20,200	가. 함유시험 (휘발성)	20,200				
나. 함유시험 (반휘발성)	43,800	나. 함유시험 (반휘발성)	43,800				
다. 용출시험 (휘발성)	23,100	다. 용출시험 (휘발성)	23,100				
라. 용출시험 (반휘발성)		라. 용출시험 (반휘발성)					
토양오염 검사	토양오염 검사	1. 수소이온 농도	2,800	토양오염 검사	토양오염 검사	1. 수소이온 농도	2,800
		2. 카드뮴, 구리, 납 (1항목당)	10,600			2. 카드뮴, 구리, 납 (1항목당)	10,600

## 현 행

## 개 정 안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3. 비소	8,700
		4. 수은	18,300
		5. 6가크롬	18,300
		6. 아연, 니켈 (1항목당)	25,700
		7. 불소	49,100
		8. 유기인	27,900
		9. PCB	49,600
		10. 시안	11,100
		11. 페놀류	41,200
		12. 유류(BTEX)	28,500
		13. 유류(TPH)	36,400
		14. TCE, PCE	19,400
		15. 시료채취비 (1공당)	43,200
		16. 토양중 잔류농약 (1항목당)	20,700
		17. 정밀조사 평가비 (시료채취비, 분석비 제외)	868,800
	소각시설 검사	1.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 (시료채취)	2,166,000
		2.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2,568,500
		3. 다이옥신 시료채취 출장비	266,000
	폐기물, 토양 및 수질 등	1.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가. 폐기물, 토양, 수질 나. 정제시료 <sup>(1)</sup>	2,568,500 850,000
주) (1) 정제시료란 추출액에 EPA1613 방법에 따라 정제용내부표준물질을 넣어 실리카, 알루미늄 및 활성탄칼럼으로 정제한 시료를 의미한다. 이때 고분해능질량분석기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된 시료의 GC크로마토그램을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분리칼럼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 1. 정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분 야	세부분야	검 사 · 시 험 항 목	금액(원)
		3. 비소	8,700
		4. 수은	18,300
		5. 6가크롬	18,300
		6. 아연, 니켈 (1항목당)	25,700
		7. 불소	49,100
		8. 유기인	27,900
		9. PCB	49,600
		10. 시안	11,100
		11. 페놀류	41,200
		12. 유류(BTEX)	28,500
		13. 유류(TPH)	36,400
		14. TCE, PCE	19,400
		15. 시료채취비 (1공당)	43,200
		16. 토양중 잔류농약 (1항목당)	20,700
		17. 정밀조사 평가비 (시료채취비, 분석비 제외)	868,800
		18. 벤조(a)피렌	131,600
	소각시설 검사	1.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측정 (시료채취)	2,166,000
		2.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2,568,500
		3. 다이옥신 시료채취 출장비	266,000
	폐기물, 토양 및 수질 등	1. 다이옥신 및 퓨란 분석 가. 폐기물, 토양, 수질 나. 정제시료 <sup>(1)</sup>	2,568,500 850,000
주) (1) 정제시료란 추출액에 EPA1613 방법에 따라 정제용내부표준물질을 넣어 실리카, 알루미늄 및 활성탄칼럼으로 정제한 시료를 의미한다. 이때 고분해능질량분석기의 사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뢰된 시료의 GC크로마토그램을 함께 제출하거나 혹은 분리칼럼을 제공하여야 한다.			
비고 : 1. 정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험항목의 수수료는 그 시험항목과 유사한 시험항목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에 따른다.			

## 현 행

## 개 정 안

[별표 3]

### 재교부 수수료

(제3조 제1항 관련)

구 분	금액(원)
1. 검사·시험성적서 (1건)	1,000
2. 외국어번역문 (1건)	2,000
3. 교육수료증 (1건)	1,000

[별표 3]

### 재교부 수수료

(제7조 제1항 관련)

구 분	금 액
1. 검사·시험성적서 (1건)	1,000원
2. 검사·시험성적서의 영어번역문 (1건)	2,000원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p> <p style="text-align: center;"><b>위해요소중점관리 교육비</b> (제3조 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70 494 1097 798"> <thead> <tr> <th data-bbox="170 494 878 574">구 분</th> <th data-bbox="878 494 1097 574">금액(원)</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170 574 878 649">1. 기본교육과정</td> <td data-bbox="878 574 1097 649">250,000</td> </tr> <tr> <td data-bbox="170 649 878 724">2. 전문교육과정</td> <td data-bbox="878 649 1097 724">350,000</td> </tr> <tr> <td data-bbox="170 724 878 798">3. 보수교육과정</td> <td data-bbox="878 724 1097 798">80,000</td> </tr> </tbody> </table>	구 분	금액(원)	1. 기본교육과정	250,000	2. 전문교육과정	350,000	3. 보수교육과정	80,000	<p>〈삭 제〉</p>
구 분	금액(원)								
1. 기본교육과정	250,000								
2. 전문교육과정	350,000								
3. 보수교육과정	80,000								

## 현 행

##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 검사·시험의뢰서

(제2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처리기한	200 . . 일까지		비고
					이행기한	200 . . 일까지		
시료명 (품목)	검사·시험 항 목	검사·시험 목 적	제조사	제 조 법 또는 성분표	수수료	성적서수령방법		
						우편	직접교부	

상기 시료를 검사·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 의뢰인

- 성 명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주 소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업체명 및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 업체소재지(시료채취장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 검사·시험 의뢰서

(제3조 제1항 관련)

의뢰인	성 명	(서명)	연락처
	주 소		
업체명 및 소재지	업체명 ( 대표 )	연락처	
	주 소		
우편물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의뢰인, <input type="checkbox"/> 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검사·시험성적서 신청부수	국문 1부(기본), 국문추가( )부, 영어번역문( )부, <input type="checkbox"/> KOLAS		

※ 국문 1부(기본) 외 추가신청 및 성적서 영어번역문 신청 시에는 [별표 3]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적서 영어번역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유형	시료명	검사·시험 항 목	검사·시험 목 적	채취장소 또는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수수료	성적서수령방법		비고
						우편	직접교부	

접수번호 :	처리기한	. . 일까지
	이행기한	. . 일까지

상기 시료를 검사·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 현 행

##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 검사·시험의뢰 접수증

(제2조 제3항 관련)

### 검사·시험의뢰 접수증

(제3조 제3항 관련)

□ 주 소

□ 주 소

접수번호	검사·시험 의뢰사항	수수료	귀하	
			처리기한	비고

접수번호	검사·시험 의뢰사항	수수료	귀하	
			처리기한	비 고

상기와 같이 검사·시험의뢰를 접수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검사·시험의뢰를 접수하였습니다.

검사·시험성적서는 민원인이 요구한 수령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직접교부하여 드립니다.

검사·시험성적서는 의뢰인이 요구한 수령방법에 따라 우편 또는 직접 교부하여 드립니다.

본원의 사정에 따라 검사·시험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본원의 사정에 따라 검사·시험기일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서신으로 별도 통지하여 드립니다.

200 . . . . .

. . . .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접수자 )

(접수자 )

※ 문의전화 : 570-3330~3

※ 문의전화 : 570-3330~3

## 현 행

##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 납 입 고 지 서

(제3조 제2항 관련)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제 호	년도	회계
(장)	(관)	
(항)	(목)	

일금                  원정

일금                  원정

일금                  원정

₩ \_\_\_\_\_  
단 \_\_\_\_\_

₩ \_\_\_\_\_  
단 \_\_\_\_\_

₩ \_\_\_\_\_  
단 \_\_\_\_\_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영수함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납입장소 \_\_\_\_\_

정수관 귀하

년    월    일

정수관 \_\_\_\_\_

성 명                  ①

납부자

정수관                  ①

취급자                  ①

수입금                  ①

기 장                  ①

출납원

(납부자)                  귀하

(납부자)                  귀하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3호 서식>

### 검사·시험성적서

(제4조 제3호 관련)

접수번호 :

담당부서	
책임자	
담당자	
연락처	

1. 의 퇴 인	
2. 업 체 명	
3. 시료(검체)명	
4. 항목 및 방법	
5. 목적(용도)	
6. 접 수 일 자	7. 완 료 일 자
8. 비 고 사 항	

검사·시험결과

결과(판정)

\* 이 성적서의 결과는 의뢰인이 제시한 검체에 한정되는 것으로 상기 목적 외의 광고, 선전 등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 현 행

## 개 정 안

<별지 제5호 서식>

### 검사·시험업무 처리부

(제4조5호 관련)

결재			접수		의뢰인		시료명	시험 의뢰 항목	수수료		처리과정				처리			성적		비고
부장	팀장	담당	일련 번호	월일	번호	주소			성명	건수	금액	처리 부서	처리 기한	협조		월일	내용	확인	검사 시험 내용	
												부서	월일	회신 일일						

<별지 제5호 서식>

### 검사·시험성적서 재교부신청서

(제5조 관련)

처리기한		
국문	문	즉시
영어번역문		2일

업체명 및 소재지	업체명 (대표자) 주소	
의뢰서 접수 년월일	의뢰서접수번호	
검체명(시료명)		
검사·시험성적서 신청부수	<input type="checkbox"/> 국문( )부, <input type="checkbox"/> 영어번역문( )부	용도
* 영문 번역문을 신청한 경우에는 업체명과 주소 및 검체(시료명)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검사·시험성적서 (1건) : 1,000원  
 검사·시험성적서의 영어번역문(1건) : 2,000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 서식>

<삭 제>

제 호

수 료 증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 또는 상호 :  
교 육 과 정 :  
교 육 기 간 :

위 사람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상기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 현 행

## 개 정 안

### 〈별지 제9호 서식〉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험성적서 <input type="checkbox"/> 검사·시험성적서의 외국어번역문 <input type="checkbox"/> 위해요소중점관리교육 수수료증		재 교 부 신 청 서		처리기간		
		국 문	즉시			
		번역문	2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의뢰서 접수 년월일				의뢰서접수번호		
의뢰서내용(시료명)						
용 도				외국어명		
				신청부수		
<p>「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수수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재교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의뢰인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연락처 :</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귀하</p>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검사·시험성적서(1건) : 1,000원 외국어번역문(1건) : 2,000원 교육수수료증(1건) : 1,000원		

### 〈삭 제〉